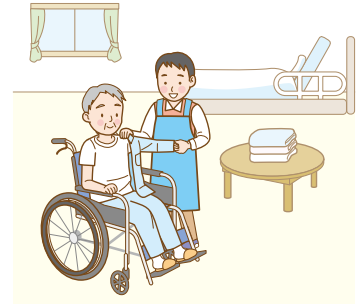


* 표시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,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

■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

개호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. 또, 시설 외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「외부서비스 이용형 특정시설」도 있습니다.



■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*

개호보험 사업자 지정을 받은 정원 30명 미만의 소규모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. 또,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의 입주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되며 (개호전용형 특정시설),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 한정됩니다.

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1개월당 이용자 부담의 기준

(단위: 엔/30일)

시설 종별 등		이용자 부담 단계	개호서비스비 (10% 부담의 경우)	식비	거주비	합계
개호노인복지시설 (특별양호노인홈)	유닛형 독실	제 1 단계	15,000	9,000	24,600	48,6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24,600	51,3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39,300	83,400
		제 4 단계	25,900 ~ 30,400	-	-	-
	공동실 (합숙실)	제 1 단계	15,000	9,000	0	24,0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11,100	37,8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11,100	55,200
		제 4 단계	23,300 ~ 27,700	-	-	-
개호노인보건시설 (기본형)	공동실 (합숙실)	제 1 단계	15,000	9,000	0	24,0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11,100	37,8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11,100	55,200
		제 4 단계	29,400 ~ 32,800	-	-	-

- 주 1: 표의 「이용자 부담 단계」는 보험료 소득 단계와는 다릅니다.
- 주 2: 제 1~3 단계의 식비·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부담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한 「보충급부」 및 11 페이지의 「고액개호서비스비」 적용 후의 금액으로 이용자 부담의 상한액이 됩니다 (제 3 단계의 식비 부담한도액은 2021년 8월부터 일부 바뀐다).
- 주 3: 「개호서비스비」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(위의 표는 특별구의 경우).
- 주 4: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제 4 단계인 분의 식비·거주비는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
- 주 5: 위의 표 외에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영양식이 가산되거나 인지증 (치매) 전문케어 가산 등이 가산됩니다. 또, 칫솔이나 화장품 등의 일용품과 독감예방접종, 기호품 등도 자기부담이 되며,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